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2. 3 선고 2020가단523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3. D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권태형

피고 2, 3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경수

변론 종결 2020. 11. 4.

판결 선고 2021. 2. 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2020. 1. 29.까지는 연 6%의, 그다음날부터

2020. 3. 26.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10,379,3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2020. 3. 26.까지는 연 6%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C와 피고 D 사이에 2019. 12.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은 피고 C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2019. 12. 10. 접수 제112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1 2019. 5. 31. 보험기간은 2019. 5. 31.부터 2020. 5. 30.까지, 보험가입금액은 5,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공급거래계약에 기한 외상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 및 2 2019. 11. 4. 보험기간은 2019. 10. 25.부터 2020. 10. 24.까지, 보험가입금액은 5,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매매거래계약에 기한 외상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위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보증보험 약정서 제3조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보험자에 지급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간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9%이다.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C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상의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E와 F이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2. 30. E에 5,000만 원을, 2020. 2. 13. F에 10,379,314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판결)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원고가 E에 지급한 보험금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시한 지연손해율에 따라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19. 12.31.부터 2020. 1.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20. 3. 26.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② 원고가 F에 지급한 보험금 10,379,314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20.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20. 3. 26.까지는 원고가 공시한 지연손해율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손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지방공업단지가 1994. 8. 11. 경북 고령군 I 리 및 J리 일원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실, H지방공업단지의 대표이사였던 K이 1997. 7. 28., 1997. 12. 5. 및 1998. 6. 10. 각 매매를 원인으로 위 각 일자 무렵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당시 매도인은 K을 매수인으로 알고 있었고 K과 H지방공업단지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 사실, H지방공업단지에 속해 있던 25개 입주업체는 2004년경 L지방산업단지운영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를 만들어 H지방공업단지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6. 4. 5. 매매를 원인으로 당시 이 사건 협의회 회장이었던 G와 총무였던 피고 D에게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9. 10. 22. 매매를 원인으로 G의 지분에 대하여 당시 위 협의회 총무였던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9.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의 지분에 대하여 피고 D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2019. 12. 10. 접수 제112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H지방공업단지의 사무실 및 식당 부지로 사용되어 온 사실, 이 사건 협의회는 정기총회 회의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요 자산으로 일반회계 항목에 포함하여 보고하여 왔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토지관리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면서 이를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D의 책임재산인지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H지방공업단지가 재정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이를 매수하면서 K에게 그 명의만 신탁한 재산이다. 당시 매도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K은 그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 이후 G와 피고 D에게 각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C에 게 G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D에게 피고 C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는데 이는 명의수탁자 지위의 승계 내지 공동명의수탁자사이의 대외적인 소유형태 변경에 불과할 뿐 실제로 권리변동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C의 책임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 D에게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 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 지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H지방공업단지는 경북 고령군 1리 및 J리 일원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리 및 J리에 존재하고, 실제로 위 각 부동산 중 일부는 H지방공업단지의 사무실 및 식당 부지로 사용되었으며, H지방공업단지 및 이 사건 협의회에서 정기총회 보고, 토지관리목록 작성·보관등을 통하여 위 각 부동산을 그 소유자산으로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K을 비롯하여 그 이후의 등기명의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권리 주장을 한 정황은 없는 점, K을 비롯하여 그 이후의 등기명의인들은 모두 H지방공업단지 또는 이 사건 협의회 임원이나 총무였던 점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H지방공업단지가 그 사업목적에 위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명의를 K에게 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은 K과 H지방공업단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K이 위 각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이후 G, 피고 D, 피고 C, 그리고 다시 피고 D에게 순차로 각 1/2 지분을 매매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고 이에 기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것은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대외적으로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 할 뿐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K과 그 이후의 등기명의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양자간 명의신탁으로서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 C 앞으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므로, 이를 피고 C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가 피고 D와 사이에 2019. 12. 10.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로써 피고 C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피고 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 C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C의 책임재산임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사해행위취소의 다른 요건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현정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경상북도 고령군 대1974.9㎡

단, 공유자 지분 2분의 1

2. 경상북도 고령군 일야3984㎡

단, 공유자 지분 2분의 1

3. 경상북도 고령군 일야10572㎡

단, 공유자 지분 2분의 1 -이상-